

목돈급여 주요내용

| 구분 | 내용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|---|---|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가입종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부가금형 : 부가금(이자) 분할 지급(매3개월, 매6개월, 매1년 중 선택) ▶ 예탁형 : 급여금 청구시 원리금 일시 지급 ▶ 적립형 : 가입기간(3년, 5년) 만기시 원리금 일시 지급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가입금액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부가금형 및 예탁형 : 1구좌(100만원) ~ 100구좌(1억원) ▶ 적립형 : ▪월 1만원~277만원(가입기간 3년), ▪월 1만원~166만원(가입기간 5년) ※ 비과세종합저축은 전 금융기관을 포함하여 5천만원까지 가입 가능 ※ 가입 완료 후에는 가입종류 및 가입기간 변경 불가 ※ 적립형 가입시 부담금 자동이체 신청서(별지 서식) 작성 후 신분증 및 통장사본 첨부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급여율 | ▶ 시중 금리 변동에 따라 급여율이 조정될 수 있음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부담금 납입방법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가입신청서 제출 후 90일 이내에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가입신청이 무효 처리됨 ▶ CMS 입금 : 가입접수 및 승인 완료 후 회원 휴대전화로 입금은행 계좌번호 및 코드 문자 전송 ⇨ 입금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colspan="2">금융기관 및 계좌번호</th> <th>예금주 및 CMS코드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농협은행</td> <td>083-01-044500</td> <td rowspan="7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예금주 : 한국교직원공제회 ▪ CMS 입금표 기재요령 ① 소속코드 7자리 ② 월분 2자리+03 ③ 급여번호 9자리 (회원번호 6자리+순번 3자리) 예시) 2월에 목돈급여 부담금 납입시 ① 1234567 - ② 0203 - ③ 123456001 </td> </tr> <tr> <td>국민은행</td> <td>067-01-0506-121</td> </tr> <tr> <td>신한은행</td> <td>100-020-426375</td> </tr> <tr> <td>부산은행</td> <td>116-01-002085-2</td> </tr> <tr> <td>우리은행</td> <td>143-041491-01-036</td> </tr> <tr> <td>제주은행</td> <td>01-01-274230</td> </tr> <tr> <td>KEB하나은행</td> <td>149-890294-18405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가상계좌 입금 : 가입접수 및 승인 완료 후 회원 휴대전화로 농협 또는 신한 가상계좌번호 문자 전송 ⇨ 입금 (단, 타행 입금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) ▶ 여러번 나누어 입금할 경우, 가입일은 마지막 입금일로 처리되며 선입금분에 대한 이자 발생 안됨 ▶ 적립형은 부담금 자동이체 신청서(별지 서식)에 기재된 통장에서 자동이체 됨(매월 7일, 17일, 25일 중 선택) |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 | | 예금주 및 CMS코드 | 농협은행 | 083-01-044500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예금주 : 한국교직원공제회 ▪ CMS 입금표 기재요령 ① 소속코드 7자리 ② 월분 2자리+03 ③ 급여번호 9자리 (회원번호 6자리+순번 3자리) 예시) 2월에 목돈급여 부담금 납입시 ① 1234567 - ② 0203 - ③ 123456001 | 국민은행 | 067-01-0506-121 | 신한은행 | 100-020-426375 | 부산은행 | 116-01-002085-2 | 우리은행 | 143-041491-01-036 | 제주은행 | 01-01-274230 | KEB하나은행 | 149-890294-18405 |
|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 | | 예금주 및 CMS코드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농협은행 | 083-01-044500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예금주 : 한국교직원공제회 ▪ CMS 입금표 기재요령 ① 소속코드 7자리 ② 월분 2자리+03 ③ 급여번호 9자리 (회원번호 6자리+순번 3자리) 예시) 2월에 목돈급여 부담금 납입시 ① 1234567 - ② 0203 - ③ 123456001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국민은행 | 067-01-0506-121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신한은행 | 100-020-426375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부산은행 | 116-01-002085-2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우리은행 | 143-041491-01-036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제주은행 | 01-01-274230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KEB하나은행 | 149-890294-18405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중도해약시 부가금 지급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부담금 납입 후 1년 미만에 해약할 경우 부가금은 부담금 납입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>납입 경과기간</th> <th>해약급여금</th> <th>납입 경과기간</th> <th>해약급여금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90일 미만</td> <td>부가금의 50%</td> <td>90일 이상 ~ 180일 미만</td> <td>부가금의 80%</td> </tr> <tr> <td>180일 이상</td> <td>부가금의 90%</td> <td>-</td> <td>-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납입 경과기간 | 해약급여금 | 납입 경과기간 | 해약급여금 | 90일 미만 | 부가금의 50% | 90일 이상 ~ 180일 미만 | 부가금의 80% | 180일 이상 | 부가금의 90% | - | - | | | | | | |
| 납입 경과기간 | 해약급여금 | 납입 경과기간 | 해약급여금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90일 미만 | 부가금의 50% | 90일 이상 ~ 180일 미만 | 부가금의 80%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180일 이상 | 부가금의 90% | - | -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수급권자 지정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회원 사망시에는 목돈급여 해약처리 후 민법의 상속순위에 따라 급여금 지급 ▶ 배우자 및 직계존·비속, 형제자매에 한하여 수급권자(1인)를 지정할 경우 수급권자에게 지급 - 지정(변경)신청서(본회양식), 회원의 인감증명서, 회원과 수급권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(형제자매 지정시 제적등본) 각 1부를 첨부하고, 신청서에는 반드시 인감증명서에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급여금 보장 | ▶ 특별법인 한국교직원공제회법(제13조)에 의거 급여금의 안정성 보장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비과세종합저축 신청자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만 63세 이상 거주자(2017년 가입 기준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단, 2019년까지 매년 가입연령 1세씩 상향하여 2019년에는 만 65세 이상만 가입 가능 ▶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(장애인등록증, 복지카드, 장애인증명서 중 택1 첨부) ▶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상이자 (국가유공자증, 국가유공자확인원 중 택1 첨부 : 보호번호 앞자리 21, 23, 35, 51, 59, 61, 65, 71, 81, 97만 해당) ▶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(독립유공자증, 독립유공자유족증, 독립유공자확인원, 독립유공자유족확인원 중 택1 첨부) ▶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(기초생활수급자증, 수급자증명서 중 택1 첨부) ▶ 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(고엽제후유의증환자증, 고엽제후유의증환자확인원 중 택1 첨부) ▶ 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제2호에 따른 5·18민주화운동 부상자 (5·18민주유공자증, 5·18민주유공자확인원 중 택1 첨부)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기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제도 가입신청 및 급여청구 진행 상황, 급여율 변경 등 제도 관련 중요 내용은 휴대전화의 문자서비스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문자 전송됨 ▶ 주소, 연락처 등 인적사항(개인정보)이 기존 등록된 정보와 상이할 경우 자동 변경됨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
목돈급여 세부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, 자택 주소 및 전화번호, E-mail 등 연락처가 변경되시면 회원 콜센터(1577-3400) 또는 홈페이지(www.ktcu.or.kr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「부가금형·확정연금형 가입신청 회원은 하단 서류 작성과 무관하며
적립형 가입신청 회원만 신청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」

(서식 제2016-3호)

(개정일 : 2016. 6. 1)

부담금 자동이체 신청서

1. 신청 회원

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|-------|
| 성 명 | | 생년월일 | 년 월 일 |
| 회원번호 | | 분회명 | |
| 휴직기간 [휴직자에 한함] | 년 월 일 ~ | | 년 월 일 |

2. 자동이체 신청 급여 내역 신규 변경 해지

| 급여명 | 급여번호 | 금액 | 상품명 | 급여번호 | 금액 |
|-----|------|----|-----|------|----|
| | | 원 | | | 원 |
| | | 원 | | | 원 |
| | | 원 | | | 원 |
| | | 원 | | | 원 |

※ 급여번호는 직원작성 / 대여의 경우 금액 작성 불필요

3. 자동이체 신청 및 동의 (반드시 본인 명의 예금계좌 기재)

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|---|
| 금융기관 | | 계좌번호 | |
| 이체개시연월 [휴직자에 한함] | 년 월 | 지정이체일 | <input type="checkbox"/> 7일 <input type="checkbox"/> 17일 <input type="checkbox"/> 25일 |
| 자동이체 동의 | 본인은 월 부담금이 상기 계좌에서 자동이체 되는 것에 동의합니다. <input type="checkbox"/> 자동이체 동의 | | |

| | |
|------|--|
| 유의사항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자동이체 신청은 휴직회원 및 목돈·퇴직생활급여 적립형 가입회원만 가능합니다. ■ 휴직자의 경우 대여금은 25일 인출이 해당 월 마지막 이체인 관계로 미인출시 해당 월 말일까지 개별납부 하셔야 연체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. ■ 자동이체 해지 시 개별납부를 원하실 경우 본회로 문의 바랍니다. (☎1577-3400) |
| 첨부서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공통 : 예금주 신분증 사본 1부 ■ 추가 : 휴직발령통지서 1부 (휴직 시, EDI 사용 분회만 해당) 통장사본 1부 (적립형 신규가입 시) |

위와 같이 부담금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서명 (인)